

#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 규정

제정 1986. 9. 1

7차 개정 2005. 5. 12. 규칙 제1132호

8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8호

9차 개정 2020. 9. 16. 규칙 제1548호

10차 개정 2021. 10. 7. 규칙 제1590호

[11차 개정 2022. 12. 13. 규칙 제1623호](#)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제반 생활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 학칙과 이 규정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학생증

제3조(발급) ① 학생증은 매 학년초에 등록을 필한 신·편입생 전원에게 학생처에서 발급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학생증을 분실 또는 오손할 경우 [재발급을 받아야 하며,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.](#)<개정 2020.5.11.>, [<개정 2022.12.13.>](#)

제4조(소지 및 용도)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.

② 학생증은 학생신분증, 도서대출용 및 은행직불카드를 겸용한다.

제5조(유효기간)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본 대학교 재학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발급명의)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.

제7조(삭제)

제8조(무효) ① 학생증은 당해 학생이 졸업, 퇴학 및 제적되었을 때 무효가 된다.

② [<삭제 2022.12.13.>](#)

제 3 장 학생단체

- 제10조(단체조직) ① 학생은 총학생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외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를 조직할 수 있다.
- ②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매년 3월중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하고 별지 1호, 2호 서식에 의거 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5.11.>
1. 전년도 사업보고서(기존단체)
  2. 신년도 사업보고서(기존단체)
  3. 회원명부(전회원 명부)
  4. 발기인 명부(신규단체)
  5. 회칙(신규단체)
  6. 동아리 소개서(신규단체)
  7. 신년도 행사계획서(신규단체)
- ③ 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.
- ④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전항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
- 제11조(지도) ①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지도교수를 추대하도록 한다.
- ②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
  2.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제 4 장 학생 및 특별활동

제12조(특별활동 신고 및 사전승인)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·내외 특별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(별지 제3호, 제4호 서식) <개정 2021.10.7.>

제13조(게시)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한다.

- 제14조(지도)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행사 및 집회의 취소
  2. 게시물 내용의 임의 수정

### 3. 게시물의 회수

#### 제 5 장 간 행 물

제15조(정의)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관여하는 모든 간행물로서 인쇄, 프린트, 사진, 필기 등 그 제작방법의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간행물을 말한다.

제16조(발행승인 신청) ① 학생자치활동에 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총학생회 편집위원회의 승인과 자문위원회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행하며 배포 전에 총장에게 신고한다. 다만, 총장 명의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발행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인쇄 완료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3부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17조(지도) ① 간행물의 편집, 인쇄 및 발행에 있어서 그 계획, 시행과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②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간행물 발행 승인의 취소
2. 간행물 제작 중지
3. 간행물 배포 중지
4. 배포된 간행물의 회수
5.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#### 제 6 장 학생규율

제18조(품위유지) 학생은 본 대학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(행사참여)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반 행사에 출석률이 낮은 학생에게는 장학혜택 및 학자금 융자 추천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0조(시설사용) ① 학생이 학내시설 및 교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설 및 교구 사용 중 파손 또는 재산 손실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그 정도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21조(여행신고) <삭제 2021.10.7.>

#### 제 7 장 상 별

## 제 1 절 포 상

제22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.

1. 성적우수상 : 학사과정 전 기간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선행상 : 학내외에서 특별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3. 공로상 : 학생활동에 있어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

제23조(추천 및 선발) ① 제22조의 포상 대상자는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.<개정 2020.5.11., 2021.10.7.>

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24조(포상시기) 포상은 졸업식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25조(기록)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.

## 제 2 절 징 계

제26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) ①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② 근신은 3일 이상 21일 이내로 하고,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한다.<개정 2020.9.16.>

③ 정학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, 무기정학은 징계 종료일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9.16.>

④ 징계의 기간은 비위의 정도, 과실의 경중, 고의성 등에 따라 정하되, 근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, 3월 이상의 정학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적을 의결할 수 있다.<신설 2020.9.16.>

제27조 (징계사유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한다.<개정 2020.9.16., 2021.10.7.>

1.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
2. 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
3.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
4.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
5.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
6. 학교 기물의 손괴,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하는 행위를 한 학생
7. 학내에서 폭력, 폭언을 행사하거나 흥기 또는 마약을 소지한 학생

8. 학내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
  9. [청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5조](#)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학생<개정 2022.12.13.>
  10.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
  11. 징계 기간중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학생
  12. 기타 1호~11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
- ② <삭제 2021.10.7>

제28조 (징계사유의 조사 및 절차) ① 학생처장은 학생의 제27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<신설 2020.9.16.>

② 학생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에 관한 조사 진행 사실을 고지하고, 구두진술, 증거 제출,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신설 2020.9.16.>

③ 제27조 제1항 9호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<신설 2020.9.16.>

제29조(징계 처분) ① 제2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한다.<개정 2020.5.11., 2020.9.16., 2021.10.7>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학내생활, 개전의 정,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16., 2021.10.7.>

③ 징계를 발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1. 사건경위서 1부(별지 제5호 서식)
2. 본인진술서 1부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(별지 제6호 서식)
3. 지도교수 의견서 1부(별지 제7호 서식)
4. 학생징계심의요구서(별지 제9호 서식)<신설 2020.9.16.><개정 2021.10.7.>

④ 총장은 위원회의 징계심의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, 학생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징계처분사항을 징계대상 학생과 그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서면(별지 제11호 서식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9.16., 개정 2021.10.7.>

제30조(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) 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.

제31조(징계의 재심의) ① 제29조 제4항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징계처분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(별지 제10호 서식)를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20.9.16., 개정 2021.10.7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9.16., 개정 2021.10.7.>

1.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
2. 징계심의 이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
제32조(징계의 감면 및 해제) ① 총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징계감면의견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16., 개정 2021.10.7.>

② 총장은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징계해제의견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(별지 제8호 서식)<개정 2020.5.11., 2020.9.16., 개정 2021.10.7.>

제33조(기록) 징계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.<개정 2020.9.16., 2021.10.7.>

## 제 8 장 학생활동 자문위원회<삭제 2021.10.7.>

제34조(목적) <삭제 2021.10.7.>

제35조(구성) <삭제 2021.10.7.>

제36조(회의) <삭제 2021.10.7.>

제37조(기능) <삭제 2021.10.7.>

## 제 9 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<신설 2021.10.7.>

제38조(목적)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, 포상 및 징계, 학생활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학생생활지도위원회”를 둔다.<신설 2021.10.7.>

제3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<신설 2021.10.7.>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상담센터장 및 각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과장이 아닌 교내 교수 및 교외 인사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신설 2021.10.7.>

- 제4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신설 2021.10.7.>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신설 2021.10.7.>
- ③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<신설 2021.10.7.>

제4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신설 2021.10.7.>

1. 학생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
3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4.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폐지) 종전의 학생증 발급 규정, 학생단체활동 규정, 학생상벌규정 및 청주 교육대학 장학금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학생 동아리 신설 가입 신청서

동아리명					
활동 계획					
동아리 지도교수	소속			성명	(인 또는 서명)
가입 회원	연번	심화과정	학번	성명	비고
	①				
	②				
	③				
	④				
	⑤				
	⑥				
	⑦				
	⑧				
	⑨				
	⑩				

위와 같이 학생 동아리 신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동 아 리 명:  
대표 학생 성 명 : (인)

청주교육대학교 학생처장 귀하

## 학 생 단 체 신 고 서

단 체 명

설립연월일

지 도 교 수

대 표 학 생

학년 :      학과 :      학번 :      성명 :

설립목적

- 붙 임 1. 회원명단 1부  
2. 사업계획서 1부  
3. 동아리 소개서 1부  
4. 동아리 대표자 명단 1부  
5. 회칙 1부

위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20 . . . .

대 표 학 생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  
연락처 :

동아리연합회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

<b>특별 활동 승인 신고서</b> <b>(교외활동)</b>				계	팀 장	과 장	총 장				
						전 결					
단 체 명				접수일자	지시사항						
행 사 명											
일 시	20 년 월 일 부터 ~ 20 년 월 일 까지 ( 일간) ( 시 분 부터 ~ 시 분 까지 )										
장 소											
목 적											
참가예정인원	명	지도교수 참석여부	성 명	참석일자	수업 확인	(인)					
행 사 내 용				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등록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결재일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등록번호		결재일자	
	등록번호										
	결재일자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행사시 각종 안전사고[가스, 화재, 전기, 물놀이]의 예방에 주의할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본 신청서는 행사 1주일 전에 제출할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 신고 미이행시 보험적용을 못 받은 등의 불이익이 있음											
위와 같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div> 대 표 학 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 육 과    학 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 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 휴대폰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상연락처 :  교 육 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과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 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											

안전사고 예고없다!

오직하나 사전예방!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<b>특별 활동 승인 신고서 (교내 활동)</b>		계	팀 장	과 장	총 장				
				전 결					
단 체 명		접수일자	지시사항						
행 사 명									
일 시	20 년 월 일 부터 ~ 20 년 월 일 까지 ( 일간) ( 시 분 부터 ~ 시 분 까지 )								
장 소		인		인					
		인		인					
목 적									
참가예정인원	명	지도교수 참석여부							
행 사 내 용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0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록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결재일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		등록번호		결재일자	
등록번호									
결재일자									
<p>☞ 행사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주의하고 시간을 엄수할 것</p> <p>☞ 본 신청서는 행사 3일전에 제출할 것</p> <p>☞ 사전 신고 미이행시 보험적용을 못 받은 등의 불이익이 있음</p>									
위와 같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2 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						
대 표 학 생	교육과	학번	성명	인					
휴대폰 :									
	교육과	학과장	성명	인					
<b>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</b>									

안전사고 예고없다!

오직하나 사전예방!

# 사건경위서

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명	
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, 학년	( )학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사 건 명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건내용	

위와 같이 사건경위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학생처장 성명: (인)

# 진 술 서

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명	
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, 학년	( )학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연 락 처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 건 명	
<input type="checkbox"/> 진술내용	(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)

위 진술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작성자: (서명)

## 지도교수의견서

심화 과정		학번		성명		지도 교수	





학생 징계 심의 요구서						
인적 사항	학 과		학년		학번	
	성 명			생년월일		
징계양형						
징계사유						
징계요구 의견						

위와 같이 학생 징계 심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월    일

학생처장   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## 학생 징계 재심의 요청서

인적 사항	학 과		학년		학번	
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

재심의 요청 사유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징계 절차상의 하자 또는 징계 심의 이후 증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경우 이를 중심으로 사유 작성&gt;</p>
--------------	--

위와 같이 징계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**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**

<b>학생 징계 처분 통보서</b>						
인적사항	학 과		학 년		학 번	
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
징계처분						
사유						
징계기간						
부가사항	<p style="color: blue; margin: 0;"><i>&lt;예시&gt;</i></p> <p style="color: blue; margin: 0;"><i>1.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함.</i></p> <p style="color: blue; margin: 0;"><i>2. 징계 결과가 학적부에 기재되며, 수업, 학교시설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제한됨.</i></p>					
<p>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: 10px 0 10px 100px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margin: 10px 0 10px 100px;"><b>청주교육대학교총장 (직인)</b></p> <p style="margin: 20px 0 20px 100px;">○○○ 귀하</p>						